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대상 물건소재지				
용도 및 목적	증명자료			
개인신청인 (위임한 사람)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법인신청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기관전화번호	
	소재지			
	방문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직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위임받은 사람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위임장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신청을 위와 같이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관할 행정청이 등기부등본 등으로 본인 소유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 관할 행정청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본인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1. 열람사항을 출력하여 줄 수는 있으나 증명·날인하여 줄 수는 없습니다.
2. 경매참가자는 경매일시와 해당 물건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 신용정보업자는 신용조사 의뢰서, 감정 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서, 금융기관은 담보주택 근저당설정 관계서류(해당 물건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근저당설정 계약서, 대출약정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물건 소유자 및 임차인 등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3.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권한은 해당 물건의 소유자·임차인·임대차계약자·매매계약자 본인만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4. 위임장에 따라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한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적어야 하며, 기재사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위임한 사람은 "서명 또는 인"란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지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명을 하실 경우에는 자필 성명(한글)을 써야 하고, 통상적인 사인(외국어, 특수문자 등)이나 한문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담당 공무원이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제시하여야 합니다.
7.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8.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명"란에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법인인감(사용인감 포함)을 찍고, 방문자는 사원증(또는 재직증명서)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9.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물건지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 사이에는 신청인의 확인(간인)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신청 접수증

접수번호:
신청인 성명:

접수일자: . . .

장 [인]

* 접수증은 온라인장애 등으로 인하여 즉시 처리가 안 되는 경우에만 교부하여 드립니다.